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부처의견 조
회 및 입법예고 알림

1.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처, 지자체 및 관련 협회는 2026년 7월 24일까
지 우리 처(식품안전정책과)에 붙임 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기일까
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.
3. 아울러, 동 개정안은 관보('26.7.10.) 및 우리 처 누리집(<http://mfds.go.kr>>법령/
자료>입법/행정예고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1부.
2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1부.
3. 검토의견서(양식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관계부처, 지자체 및 관련 협회

주무관	손익재	연구관	홍정미	식품안전정책과 전결 2026. 07. 10.
협조자				장 최종동
시행	식품안전정책과-7765	(2026. 07. 10.)	접수	M00020217870 (2026. 7. 21.)
우	28159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		
	처			/ www.mfds.go.kr
전화번호	043-719-2014	팩스번호	043-719-2000	/ sij0301@korea.kr / 비공개(6)